

최근 국내외 대 이란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

1. 이란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제재 동향

□ UN, EU 등의 추가 제재 조치

- UN은 2010년 6월에 안보리 결의(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) 1929호를 채택하여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였음.
 - 무기 수출 금지조치의 연장·확대,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 금지,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검색 가능 등 금융, 무역, 운송, 에너지 분야의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EU는 2010년 7월에 대 이란 금융거래 사전 허가제를 포함한 추가 제재조치를, 9월에 일본도 금융제재 대상(88개의 단체와 24명의 개인)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각각 발표하였음.

□ 미국의 '포괄적 이란 제재법' 발효

- 2010년 7월에 미국은 '포괄적 이란 제재법(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,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)'을 발효시켰음.
 - 1996년 제정된 '이란 제재법(Iran Sanctions Act)'보다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란에 정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및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음.

- 동법의 발효로 이란의 원유·가스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강도가 강화되었음.

□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협상 진행

-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(미국, 영국, 프랑스, 러시아, 중국)과 독일은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이란과 핵 관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.
-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권리의 인정과 제재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, 이들 6개국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음.
- 현재까지 추가적인 협상 계획은 없으나, 이란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화할 경우 협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원유수입 제한을 포함한 대 이란 추가 제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.

2. 우리나라의 대 이란 제재 조치

- 2010년 9월에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의 결정·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, 무역, 운송, 에너지 분야의 대 이란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음.
- 이란혁명수비대(IRGC), 이란국영해운회사(IRISL), 멜라트은행(Bank Mellat)을 포함한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었음.
- 또한 안보리 결의 상 이란의 핵·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명시된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하였음.

< 표 1 >

우리 정부의 대 이란 추가 제재 조치

구 분	내 용
금융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(단체 102개, 개인 24명) ▪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및 신고제 도입 ▪ 신규 지점 개설 금지 ▪ 코레스(Corres)관계 신설 금지 ▪ 기존 코레스관계 종료 ▪ 국채 매매 금지 ▪ 보험 및 재보험 거래 금지
무역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 이란 수출보증 축소 ▪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 금지
운송 및 여행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·항공기 검색 강화 ▪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 및 화물항공기 지원 금지 ▪ 화물항공기 국내공항 접근금지 ▪ 제재대상자의 여행제한
에너지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석유·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

자료: 무역협회.

□ 금융거래 사전 신고·허가제

○ 2011년 1월 1일부터 ‘이란 관련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신고·허가제도’가 도입되었음.

- 적용 범위 : 거주자(국내 외국환은행 포함)와 금융제재 대상자가 아닌 이란 거주 개인·이란 소재 단체와의 지급 및 영수

※ 이란 관련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‘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제도’가 우선적으로 적용됨.

- 신고 대상 거래 : 건당 1만 유로 이상의 지급 또는 영수

허가 대상 거래 : 건당 4만 유로 이상의 지급 또는 영수

(건당 1만 유로 이상의 지급 또는 영수를 12개월 간 합산하여 4만 유로 이상)

○ 단, 이란 관련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식료품, 의료 장비, 의료 서비스, 인도적 목적 거래, 한국 및 이란 주재 공관의 운영 경비·인건비와 관련된 지급 및 영수는 사전 신고·허가가 면제됨.

- 사전 신고·허가를 면제받은 지급 및 영수 내역은 지급 및 영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을 통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되어야 함

<표 2> '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제도' 와의 비교

구분	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제도	이란 관련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신고·허가제도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은행총재 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은행총재 <u>신고 또는 허가</u>
거래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지급·영수에 대해 적용 모든 개인·단체와의 지급·영수에 대해 적용 * 상대방이 이란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이면 허가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금융제재 대상자가 아닌 자와의</u> 지급·영수에 대해 적용 <u>이란 거주 개인 및 이란 소재 단체</u> 와의 지급·영수에 대해서만 적용
거래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급·영수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만유로 이상(신고) 또는 4만유로 이상(허가)</u> 지급·영수시에만 적용
면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 및 이란 주재 공관의 운영 경비와 인건비 송금 등을 위한 지급·영수는 허가 면제 (2010년 11월 19일부터 시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의료장비, 의료서비스, 식료품 관련 거래, 인도적 목적 거래, 한국 및 이란주재 공관 운영경비와 인건비 송금 등을 위한 지급·영수는 신고·허가 면제</u>
시행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 (2010년 9월 9일부터 강화* 시행) * 2010년 9월 9일 이란의 개인 24명과 이란 단체 102개(이란혁명수비대, 이란국영해운회사, 멜라트은행 등)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</u>

자료: 한국은행.

3. 대 이란 무역거래 결제 방법

□ 대 이란 자금거래 경로 경색

- 국제적 제재 조치가 확산되어 대 이란 자금거래는 갈수록 경색되었음.
 - 일부 중소기업이 제3국(독일, 프랑스)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여 왔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신용장매입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등 부담이 생겼음.
- 2010년 9월에 정부가 이란 관련 금융거래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한 이란과의 자금거래 결제가 불가능해짐.

□ 대 이란 원화자금 결제 라인 신설

- 정부는 국내 기업의 정상적, 합법적 대 이란 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2개 은행(기업은행, 우리은행)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를 개설하여 수출입 대금의 결제 라인을 확보하였음.
 - 국내 수입업체는 수입대금을 원화로 동 계좌에 입금하고,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을 원화로 동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.
 - 이란 관련 자금거래는 원화 결제만 가능하며, 원화 결제 거래가 가능한 이란계 은행은 총 10개임.(기업은행 6개, 우리은행 6개: 중복 2개)

<표 3>

원화 결제 거래가 가능한 이란계 은행

우리은행 (6개)	기업은행 (6개)
▪ Bank Tejarat	▪ Bank Tejarat
▪ Bank of Industry and Mine	▪ Bank of Industry and Mine
▪ Bank Keshavarzi	▪ Bank Maskan
▪ Parsian Bank	▪ Saman Bank Corp.
▪ Bank Eghtesad Novin	▪ Bank Pasargad
▪ Karafarin Bank	▪ Sarmaye Bank

- 2010년 9월 30일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가 개설되었으며, 2010년 10월 18일 원화 계좌를 통해 원유수입대금이 최초로 지급되었음.

조사역 이현정(☎02-3779-5724)

E-mail : lhj0316@koreaexim.go.kr